

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

인 증 번 호	제 호	
프 로 그 램 명 칭		
인 증 기 관	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주 소		
유효 기 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립 청 장

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나.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다.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
 - 라.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-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 - 나.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
 - 다.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